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409호

나. 발 의 자 : 문성호 의원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2월 3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II. 제안이유

- 청소년 대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함이 대두되는 실정임.
- 특히,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적 희롱 및 폭력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될 수 있기에 단순 주입식이 아닌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을 통해 직접 깨우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.

III. 주요내용

-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피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교육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명시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3. 입법예고 : 2025. 2. 11. ~ 2. 15.(의견: 없음)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09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고 현실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강의, 토론, 실습 및 역할 연기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(학교폭력 예방교육 등)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,

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, 강의,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,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¹⁾
- 서울시교육청 또한 ‘학생 생활교육 운영계획’을 수립하고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면서, UCC 경진대회, 학생회 및 학급회의, 역할극 등과 같은 다양하고 체험적인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²⁾

1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학교폭력 예방교육)

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.

4. 강의,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,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

○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방법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조례로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한다는 점에서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정책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○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 중 하나로,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,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서,³⁾

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다 할 것입니다.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769, 2025.2.13.)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정진국(2180-8263)	입법조사관	김명신(2180-8269)
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2) 서울시교육청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

3) 서울특별시의회 보도자료(2025.2.5.)

문성호 서울시의원, “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!”

- 지난 2024년,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을 모두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받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발의했음을 보고

-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와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보완 및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알림